

# 『기술혁신전문펀드(6호)』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## (프로젝트펀드 공고 내용 발췌)

기술혁신전문펀드는 「산업기술 자금관리 규정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예산을 예치하는 R&D 전담은행(중소기업은행, (주)신한은행, (주)하나은행)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조성하여 산업기술 자금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KEIT)이 기획 및 관리하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가 운영하는 정책형 민간펀드입니다.

2025년도 「기술혁신전문펀드(6호)」의 프로젝트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### 1. 선정 개요

#### 1-1. 프로젝트펀드(운용사 제안방식)

항 목	세부내용
출자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총 200억원에 대하여 운용사 자율제안*</li> <li>* 자원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및 선정</li> </ul>
모펀드 출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약정총액의 50%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협의</li> </ul>
펀드 결성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정일로부터 4개월*</li> <li>*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하에 연장 가능</li> </ul>

#### 1-2. 공통사항

항 목	세부내용
출자대상 투자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</li> <li>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</li> <li>○ 「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</li> <li>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</li> <li>○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외국집합투자기구(이하 “역외펀드”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고일 시점의 현행 법규에 따른 적법·유효한 투자기구일 것을 요하되, 펀드 결성 시 별도 협의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, 본 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</p>

항 목	세부내용
운 용 사 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안서 접수일 현재 '출자대상 투자기구'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의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국내 설립 법인</li> <li>○ 공동 운용(CO-GP)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</li> <li>○ 역외펀드 운용사의 경우 모펀드의 역외펀드 가입 전까지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</li> <li>○ 제안운용사에 운용 중인 기존 펀드 정관(규약)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</li> </ul>
운 용 사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</li> </ul> </li> </ul> <p>* 한국성장금융: www.kgrowth.or.kr (출자사업 공고)</p>

## 2. 투자대상

### 2-1. 프로젝트펀드(운용사 제안방식)

- 국내 중소·중견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\* 제외) 및 국외창업기업\*\*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  - \*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·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
  - \*\*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(정의) 3호의2에 따른 국외창업기업

주목적 투자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부 R&amp;D과제 수행 경험 보유 기업에 투자<sup>주)</sup></li> </ul> <p>주) 신규 투자 방식으로 피투자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는 방식의 투자로서, 신주·구주가 혼합된 경우,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</p>

## 3. 주요 출자조건

### 3-1. 프로젝트펀드(운용사 제안방식)

항 목	세부내용
운 용 사 출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약정총액의 1% 이상*</li> <li>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,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</li> <li>* 「상법」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위탁운용사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(단,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)</li> </ul>

항 목	세부내용
핵심 운용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</li> <li>○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당 핵심운용인력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</li> <li>○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펀드운용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</li> <li>○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(정관)에 기재</li> </ul>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존속기간, 투자기간, 운용보수 등은 펀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개별제안</li> </ul>

### 3-2. 공통사항

항 목	세부내용
출자자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기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협의 하에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책기관 및 정책성 펀드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</li> <li>- 해외출자자(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)가 참여하는 경우</li> <li>- 기관투자자 및 법인 외 개인출자자 등이 참여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수탁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</li> <li>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</li> </ul>
회 계 감 사 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</li> </ul>
펀 드 전자보고 시 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펀드 전자보고시스템 사용 의무</li> <li>○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</li> <li>○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</li> </ul>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</li> <li>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 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해야 함</li> <li>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 과정에서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</li> </ul>

## 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### 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(미해소),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
 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 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    - 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주의
    - 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제외한 펀드운용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경고·시정명령·업무정지
- ※ 다만,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,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(직원인 경우) 또는 문책경고(임원인 경우)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

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#### 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최소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 등 펀드 관련 계약을 포함, 이하 동일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 시,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

## 5. 제재 사항 및 기타

#### 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
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- 선정된 운용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, 고의적·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
## 6. 접수처 및 문의 방법

□ 접수처 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  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 SK증권빌딩 11층)

□ 문의방법 : 한국성장금융 산업금융2팀

연락처	E-mail
02-2090-9141	answerkim@kgrowth.or.kr
02-2090-9124	hekim@kgrowth.or.kr

2025년 7월 25일

# 한 국 성 장 금 융 투 자 운 용 (주)